부양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보호

뉴욕 시 인권위원회(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)는 고용주가 사업을 강화하고 좀 더 넓은 포용력을 가지며 NYC 인권법을 준수하는 고용 관행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원입니다. 본 문서는 여러분의 채용 및 의사 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변경 사항인 부양 의무가 있는 근로자 및 입사 지원자에 대한 새로운 보호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2016년 5월 4일부터 뉴욕 시 인권법에 따라 부양 의무가 있는 근로자 및 입사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
이러한 신규 규정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입사 지원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.

- 근로자 또는 입사 지원자가 입양 아동 및 위탁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양육 중이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부모인 경우

  또는

- 근로자 또는 입사 지원자가 장애가 있는 부모, 형제자매, 배우자, 자녀(전 연령), 조부모 또는 손자손녀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거나 진료 및 일상생활을 위해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동거인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인 경우

부양 의무를 이유로 근로자 및 입사 지원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.

부양자 차별은 다음과 같은 부양 의무를 이유로 직장에서 채용, 진급 등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.

- 부양자녀가 있으며 함께 거주하는 경우
- 배우자에게 지병이 있는 경우
- 위탁 또는 입양 아동을 부양하는 경우
- 편부모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
-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친척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업무 신뢰성을 의심받는 경우
- 부양자녀가 있는 어머니는 양육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신념에 근거한 경우

이 신규 법이 제 사업에 적용됩니까?

뉴욕 시에 위치한 ***4인 이상의 임직원이 있는*** 모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본 신규 규정을 포함하여 모든 뉴욕 시 인권법이 적용됩니다. 임직원 수에는 소유주가 포함됩니다. 4인의 임직원 중 한 명이라도 뉴욕 시 내에서 근무한다면, 나머지 임직원들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뉴욕 시 밖에서 근무하여도 무방합니다.

어떤 근로자가 보호 대상입니까?

정규직, 계약직, 인턴(무급 및 유급), 노동허가증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입니다. 또한 대부분의 독립계약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금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?

- 고용주는 근로자 또는 입사 지원자의 부양 의무를 이유로 채용 및 해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채용 계약, 조건, 특권 등에 있어 차별할 수 없습니다.
- 유동적인 업무 일정 등의 특정 혜택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제공하고 부양 의무로 인해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차별적 행동이 금지됩니다.
-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의 부양 의무에 근거하여 채용 자격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명시한 광고 또는 채용 공고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.

금지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?

- 고용주는 부양 의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고용주는 부양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 시간 변경 및 조기 퇴근 등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. 단, 위와 같은 혜택을 다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양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nyc.gov/humanrights를 참조하십시요. 뉴욕 시 인권법에 의거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무료 워크숍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